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55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이인선

윤상현 • 한기호 • 김용태

김예지 · 김승수 · 강선영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

항·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을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u>①</u>		
<u><신 설></u>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		
	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u>징역에 처한다.</u>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		
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	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			
<u>작을</u>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